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533509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 2016. 10. 27.

판결 선고 2016. 10. 27.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796,610원 및 그 중 231,411,450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248,809,972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2016. 2. 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10%,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09. 1. 29. 보증원금을 22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1. 28.(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2016. 1. 22.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2. 4. 보증원금을 255,000,000원(이후 보증원금이 감액되어 24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을 2010. 12. 3.(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2015. 11. 27.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9. 1.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 2009. 12. 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5. 22.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로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9. 30. 중소기업은행에 231,411,450원(= 원금 225,000,000원 + 이자 6,411,450원), 2015. 11. 26. 국민은행에 248,809,972원(= 원금 240,000,000원 + 이자 8,809,972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으로 2015. 7. 20. 1,564,140원, 2015. 8. 17. 400,280원 등 합계 1,964,42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389,232원을 회수함으로써 남은 비용은 575,188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796,610원(=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231,411,450원 + 국민은행 대위변제금 248,809,972원 + 대지급금 잔액 575,188원) 및 그 중 231,411,45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9. 30.부터,

248,809,97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1. 26.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10.  
15.까지는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이봉락, 판사 김유정